

71-17

P. F. 4

자료번호	1/50
제 호	

대 유엔 외교 증기 대책

보 관 용
(관 리 책) /

1971. 2.

국 토 통 일 원

71-17

차 례

1. 국제적통한노력과 기존접근방법에 대한 분석평가	1
가. 강대국협상과 그 실패경위 (1943 - 47)	1
나. UN 통한노력과 그 전망 (1947 - 70)	9
2. 70년대, UN 대비신방안	25
가. 국제정세변화와 문제점	25
(1) 국제적일반변수	25
(2) 한반도에서의 국제적근본문제점	25
나. 대UN 신전략(안)	30

1. 국제적 통한 노력과 기존 접근방법에 대한 분석평가

가. 강대국협상과 그 실패경위 (1943 - 1947)

(1) 한국통일독립을 위한 국제적공약

제 2 차 세계 대전중, 1943년 12 월 1 일 에, 미국 루즈 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및 중국 장개석 총통은 카이로 선언을 통해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해방독립을 국제적으로 공약하였다.

「한국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하게 될것을 결의한다.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1)

그후 1945년 7 월 미영중소 4 대강국은 상기의 한국독립을 위한 국제적공약을 포츠담 선언을 통해 재 확인하였다.

(2) 강대국의 신탁통치방안

일본이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무조건항복의 뜻을 밝힌 직후, 1945년 12 월 27 일 「모스크바」 3상 회담에서 미·영·중·소련 3국외상은 1943년의 「카이로」,

1945년의 「포츠담」 양회담에서 공약한 한국독립보장의 구체적방법으로서 아래와 같이 신탁통치방안을 결정하였다.

「1. 한국을 독립국으로서 재건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한국임시정부를 수립한다.

2. 한국임시정부수립을 돕기 위하여 미소양군사령부의 대표로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는 전한임시정부의 수립과 한국의 완전독립을 목적으로한 미소영중 4개국의 5개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탁통치협정을 작성한다」(2)

(3) 한국민의 국론분열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협정의 신탁통치방안이 한국국민에게 알려지자, 한국민의 반응은 격렬한 반대로 나타났다.

즉 한국신탁통치안은 한국적민족주의의 기본적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당시 전국적반탁운동의 중심세력이었던 임정계통은 공식적으로 모스크바협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4대연합국원수에게 보내고 신탁통치반대의 이유로서 아래의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민족자결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민족의 총의에 절대위반됨.

둘째 타치는 제2차대전중에 누차선언한 연합국의 속약에 위반됨.

셋째, 연합국헌장에 규정한 3종타치적용조예에 재래일항도 한국에 불가함.

네째, 한국에 타치를 실시함은 극동의 안전평화를 파괴할것임」(3)

또한 1946년 1월, 이승만박사도 당시의 국제정치력학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상당히 논리적인 반탁이론을 전개하였다.

즉 그는 우리 민족의 입장으로 볼 때는 「탁치가 강요된다면 열국의 종속민으로 우리의 생사권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될 것」 이며 세계적인 측면 으로서는 「신탁이 바로 세계분쟁의 불씨」 라고 주장하였다. 이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근거로서 아래와 같이 당시의 극동 국제정치정세를 분석하였다.

「연합국 4개국의 이해와 주장은 결코 완전일치된 것이 아니며 또 장래에 여하한 파탄이 발생치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니 그 주장이 배치되니 그 파탄이 조장할 때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든지 이는 곧 우리나라에 반영하여 파쟁을 강화하고 혼란을 이르게 우리반도는 열국상쟁의 수라장으로 화할 염려가 있음니다.」(4)

이처럼 반탁론을 주장한 한 국민족주의자들은 한국을 완전독립시키지 않으면 한국으로 인해 강대국간에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또 일어나고 만다고 경고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의 완전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라」고 요청하여, 한 국민요구의 정당하고 합리적근거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 민족주의자들은 신탁을 노정한 좌파공산계열을 「선사대주의자」 혹은 「국제추수자」라고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여기에 반하여, 좌파공산계열은 신탁문제를 둘러싸고 처음에는 다소 방황하여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가 나중에는 찬탁이라는 적극적 입장으로 나왔다.

그들 좌파는

「신탁제도」 역시 그 내용이 조선독립을 달성하는 순서, 파도석방
도인 한, 충분히 진보적역할을 하는 것이며 8월 15일 해방으
로 부터의 위대한 일보전진이다.

그것은 을기조약이나, 위임통치와는 전혀 다른것일뿐 아니라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신탁과도 아주 판이한 것이다」(5)

라고 주장하여 전적인 대외외존적 반민족적자세를 취하였다.

또 모스크토헌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특이한 해석을
가여 무조건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즉 「조선의 독립은 이 회담(카이로포츠담회담)에 약속되었으나
그것은 시기도 방법도 결정되지 아니한 추상적이요 막연한 것이었다.
그후의 국제문제해결과 조선민족의 노력에 의하여 금반모스크바회담에
서 독립의 시기와 방법이 처음으로 구체적결정을 보게된 것이다.

즉 「적당한 시기」가 「최고5년」으로 되었고 「적당한 순서」가
「신탁제도를 거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소위 배신행위나
「기만」도 아니요 하등의 「국제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당시 소련은 좌파공산계열의 찬탁론을 완전지지하여 신탁통치
를 가능한 한 좋은것으로 미화하고 찬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
왔다.

이리하여 한국민의 국론은 신탁문제를 위요하여 한국민대다수의 절
대적지지를 받았는 민족진영의 민족주체적반탁입장과 소련의 절대
적옹호를 받은 좌파공산계열의 국제외존적찬탁입장으로 크게 양분대립
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타율적국론분열이 그후 비극적인 국토분단으로 까지 발전된것이다.

(4) 미소간의 이해대립과 협상결렬

한반도를 위요한 미소간의 본질적인 정치적이해관계대립은 모스크코협정에 의거한 한국신탁통치방안의 실천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한국신탁통치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미소간의 정치협상이 남북간의 비정치적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폭넓은 이해일치를 보았으나 정치문제에 이르러서 근본적인 미소간이해상충으로 인해 결렬될수 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인것이다.

즉 「한반도의 단일세력화, 즉 적화를 방지함으로써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상안전을 기한다는 미국극동정책의 기본방향과 「남진 팽창을 기본목표」로 하는 노제이래의 소련극동정책정책자세는 극동의 중앙적완충지대인 한반도에서 도저히 상호양해타협될수 없는것이고 따라서 대립충돌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후 모스크코협정에 의거한 미소간의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상호간에 타협하여 해결이 되기에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정치문제를 우선 다루기 보다는 비교적 쉽게 상호 협조할수 있는 비정치문제, 즉 경제사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소련과 협조하려고」(6) 하여 소위 기능주의 (Functionalism) 적인 간접접근법을 택하였다.

이에 반하여 소련은 「시간을 두고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분할된 두 정치단위나 사회를 통합시키려 하는 직접적 접근법을 택

다. (7)

이리하여 미소양국은 남북간의 긴급한 제문제, 즉 비정치적문제의 검토를 규정한 모스크코협정 제 4 조에 의거,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15 회의 미소공동회의 (The joint commission)를 개최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상호간의 폭넓은 의견일치를 보았다.

1. 철도, 도로 및 해상의 수송
2. 한국주민의 남북간자유여행
3. 남북간 서신교환
4. 남북간 방송망일원화와 신문의 자유배포
5. 남북간의 행정 및 경제문제에 관한 상호협력

또 그후 1946년 3월 20일, 1947년 9월 21일, 양차에 걸쳐, 한국 임시정부수립을 돕기위한 미소공동위원회 (A Seperate joint commission)가 모스크코협정제 2 조에 의거, 개최되었다. 그러나 미소간의 근본적 이해대립문제인 소위 「협의대상사회단체명부작성」문제를 위요하여 미소양국은 격렬하게 의견충돌이 되었고 미소정치협상은 결국 절렬하고 말았다.

미소양국의 의견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즉 미국측의 주장에 의하면 「소련대표는 과거수주간을 통하여 1년전의 자기의 입장에 돌아가려한다....., 미국측위원은 신탁에 대한 반대의견표시를 모스크코결의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 조장 급 선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모스크코결의는 통일조선정부의 수립 급 육상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을 직접적 기재로 혹은 내포적으

로 포함하는 광의의 문서이다. 건설한바와 같이 모든 총명한 조선인은 독립을 갈망한다. 조선인은 모스크바협정에 의하여 독립을 확보하는 기회를 환영한다. 조선인은 동결의중 다만 한 사상만을 두려워 하고 불신하는데 그것은 신탁이란 글자이다. . . .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제3항에 「신탁」이라는 글자를 기입하여 전문서의 목적을 무효로 만들 의욕이 없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글자에 관한 가상적·혹은 과장적 의미에 반대하는 토의와 의견발표를 동문서를 반대하는것으로 어찌 간주할수 있는가? 그러한 주장은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미국측위원회는 어떠한 정당 혹은 사회 단체가 반탁위원회 혹은 동성질의 기관에 소속한 것이 공위협대상인 못되는 이유로는 보지 않는다.

정당 급 사회단체가 위원회를 조직하여 장래의 원조 후원의 문제를 토의 검토하며 그기관을 반탁위원회 혹은 유사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위원회가 그 활동을 자유의사 발표에 극한하고 적극 반대를 조장 선동하지 않는한 그러한 위원회⁽⁸⁾는 미소 양외상의 협정에 의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에 반하여 소련측주장은 아래와 같다.

「(미국대표는) 모스크바결정 3항에 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명하면서 모스크바결정을 반대하는 반민주주의단체의 적은 집단과 인물들을 조선인과 일체로 간주하고 있다.

. . . 반탁운동은 흑당들이 「영수」라 . . . 운운하는 자들과 그들의 동정

자들이 조직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모스크바결정에서 자기의 반민주주의의 달성이 파탄될 것을
 알았다. 때문에 이 「영수」 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조선에서 주권
 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여 조선에서 인민
 이 국가관리에 참가하도록 하는 조선에 관한 연합국의 결정이 물론
 그들의 뜻에 맞지 아니하였다. 그 결정에 서명한 연합국을
 비난하였으며 그들은 금년에도 현시까지 「모스크바」 결정과 연합국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다. 조선인민다수는 조선에 관한 「모스
 코바」결정이 정확히 실현될 것을 원하며 만일 「모스크바」결정을
 반대하는 정당 급 단체가 「모스크바」결정 실천을 파탄하고 국가의
 주권을 장악한다면 이것은 일본인과 협력하던 자들이 주권을 장악함
 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탁투쟁위원회가 「모스크바」결정과 공위
 사업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또는 동위원회가 소집하여 「모스크바」
 결정과 공위사업을 반대하여 제문제 토의하는 각종대회소집에 관한
 반탁투쟁위원회의 성명과 활동에 대하여 남조선신문들의 일상보도가
 반탁투쟁위원회와 그에 가맹한 정당 급 단체가 「모스크바」결정과
 공위사업을 반대하여 투쟁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소련측대표는 이것
 을 반탁투쟁위원회와 그에 가맹한 정당 급 단체가 「모스크바」
 결정을 공위사업에 반대투쟁을 열성적으로 조장 선동한다는 증거로
 인정한다.」¹⁹⁾

이리하여 한국통일독립문제해결을 위한 모스크바협정의 접근방법, 즉
 신탁통치방안은 화해할 수 없는 국내외적 상극의 문제점을 내포한채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나. UN의 통한노력과 그전망(1947 - 1970)

(1) 한국통일과 UN과의 유대관계

(가) 한국전쟁 이전단계(1947 - 1950)

1947년이래로, UN의 한국문제에 대한 근본목적은 명분상으로 볼때, 한결같이 「통일독립한국의수립」에 있었다. 그러나, 실질상으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UN의목적이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근본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문제의 성격도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것이다.

즉 한국전쟁이전단계(1947 - 1950)에 있어서 한국문제에대한 UN의 정치적목적은 명분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공히 한반도에 통일, 독립한국중앙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었다. 그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항복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한반도상의 「힘의 진공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단지 「작전상의 잠정적필요성」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을 분단점령한 미소양군의 과도적 군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후, 한국전쟁이후 단계에와서는 한반도에서의 UN의 정치적목적이 명분상으로는 여전히 한국통일에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분단현상인경하의 평화유지에 있는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늘날 UN은 한국문제해결에 있어서 「분단종식을 위한 통일」이라는 현상타파적인 명분적목적과 「분단인정을 통한 평화유지」라는 현상유지적인 실질적목적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속에서 그 해결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2차대전당시, 주요연합국간의 력관계를 토대로하여 그의 현상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UN의 정치적기능과

상식을 고려해볼적에, 현재, UN이 한국통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국통일과 UN이 연관성을 갖게된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소전략변경에 기인한것이며 그 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미소협상의 결렬로 말미암아, 1945년 12월 17일 모스크바신탁통치협정이 사실상 파탄되어 버리자, 미국은 한국문제에 대한 대소교섭의 성공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1947년 9월 17일 UN(제2차총회)에 한국통일독립문제를 상정함으로써 세계적여론과 심판을 통해 전후한국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새로운 대한정책을 채택한것이다.

이리하여 한국통일과 UN은 불가분리의 상관성을 갖게 되었고, 1947년 11월 14일 UN은 「UN임시한국위원단설치와 총선거에 관한 결의문」을 통과시켜, 통일독립한국중앙정부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총선거방식」을 한국문제해결책으로 채택결정하였다.

UN이 결정한 한국통일독립을 위한 자유총선거방안은 아래와 같다.

1. 한국대표가 한국의 준정당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국민에 의하여 사실상 정당히 선거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소속이 UN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주재케 하고,
2. 한국국민의 자유와 독립의 소속한 달성에 관하여 동위원단과 협의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1948년 3월 30일이내에 성년자선거권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시행하며 이 대표자들로 하여금 국회를 구성케 하고

한국의 중앙정부를 수립할것.」(10)

이로서 미소협상에 입각한 모스크 3상결정의 한국신탁통치방식은 자동적으로 종지부를 찍고 말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을 점령하여 동지역의 행정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소련은 여전히 모스크 협정방식을 고수하고 UN의 통한방식을 완전거부하였으며 UN의 통한결의문을 무시하였다.

그후, 소련측의 UN한국임시위원단입북에대한 완강한 거부로 말미암아, UN총선거방안이 도저히 실천될수 없게되자, UN은 한국문제에 대한 과도적해결입장을 취하여 1948년 2월 26일 소위 UN소총회(The Interim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를 제최,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원의해결조치인 「한국내가능지역에서의 총선거실시와 그감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 UN임시한국위원회가 한국전역에 걸쳐서 선거의 감시를 진행시킬것과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접근할수 있는 가능한 한의 한국지역내에 있어서 선거의 감시를 진행시킬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2. 한국국민의 자유와 독립의 조속한 달성에 대하여 UN임시한국위원회와 협의할수 있는 한국국민의 대표—그한국국민의 대표는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한국국민정부를 수립할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사료함」(11)

드디어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UN감시하의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동년 12월 12일 UN(제3차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정부로 아래와같이 정식 승인하였다.

「UN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수 있었으며 또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지역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는것과 또 이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고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것과 또한 이정부가 한국내의 여사한 유일한 정부라는것을 선언함」(12)

한편 소련은 UN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지역에 들어올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소련의 단독적인 의도대로 정부를 수립할 준비에 착수하여 8월25일 그들대로의 선거를 실시하고 9월9일에는 북괴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한반도에는 UN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와 소련의 조작물인 불법적인 북괴정권이라는 두개의 정부가 사실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로서 전후 모스크토헌정에 의한 미소간의 정치적협상도 그러했듯이, UN의 한국통일독립노력도 결국은 미소간의 근본적 이해관계대립으로 말미암아 한국분단을 보다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만셈이다.

이러한 분단의 심화는 제4차UN총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1948년 10월21일부 결의번호제293(N)호)에서 「한국에 군사적분쟁이 생길우려」가 있음을 미리 지적한 바와 꼭같이 그후 1950년에 들어서 실제로 남북간 군사적충돌로 발전하고 말았다.

때마침 전후세계정치질서도 격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소대립을 핵심으로 하는 양극체제로 재편성되고 있었다.

(나) 한국전쟁이후단계 (1950 - 1970)

1950년 한국전쟁은 UN에서 토의되고 있는 한국문제의 기본성격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즉 1947년—1950년간, UN총회의 의제에 있는 한국문제는 「한국의 민족적독립이 다시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후 모든 점령군이 실시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철수되어야 할 것」을 명실공히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후부터는, UN의 한국문제에 대한 근본목적이 명분상으로는 「평화적방법에 의하여 대의제 정부형태하에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한국을 수립」하는데 있음을 한결 같이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지역(한반도)에 있어서의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전면적으로 회복함」에 있음을 명백히 알수 있다 이것은 UN의 한국문제가 바야흐로 명분과 실제사이에 간격이 생겨나고 있음을 반영시켜주는것이라 하겠다.

1950년—1970년간, 국내외적인 통한론의의 발전방향과 추세를 예리하게 분석해보면, UN의 한국문제가운데 「한반도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안보문제가, 실질적으로 보다 큰 비중을 가지고 “국제적중대문제”로 사실화해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UN의 정치적목적인 「한국통일」명분은 UN밖에서는 물론이고 UN안에서도 차차 국제적관심밖으로 이탈해가는 징조를 보다 더욱 뚜렷히 나타내고 있다.

상기와 같은 한국문제의 명분과 실제의 경향은 1950년 한국전쟁이 후 오늘날까지 20년간의 UN의 한국문제토의결과를 분석해보면 명백히 밝혀진다.

먼저 UN의 정치적·목적적인 한국통일명분이 여하한 과정을 밟아서 UN 내에서 국제적 관심밖으로 이탈해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미소간의 냉전적 대립을 핵심적 세력구조로 한 50년대의 UN에서, 한국통일문제는 비록 강대국 미소간의 냉전의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UN의 근본이념에 결부된 최대 중요문제로 매년 등장되어 국제문제화하였다.

그러나 1960년을 기점으로하여 UN 내에 비동맹중립적인 아시아·아프리카 신생독립국이 대거 새로 가입하게 되자, UN의 세력구조는 미소양극체제에서 미국세력권, 소련세력권, 중립세력권의 삼원체제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소위 UN 내의 미소냉전체제를 붕괴변질시켰다. 이러한 UN의 구조적대변화는 필연적으로 한국문제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래 한국문제는 국제정치상 미소냉전체제를 근본적 배경으로하여 UN의 논의 대상으로 등장된 세계적 「냉전과제」였는바, UN에서도 미소양국이 한국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국제정치상 미소냉전체제가 완전 후퇴하고 새로 미소협조체제 (US-US SR Detente)가 대두하고, UN내에서 비동맹중립세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UN의 한국통일문제도 냉전적인 세계문제로서의 성격을 탈피하기 시작하여 소위 「한국화의 과정」, 다시 말하면 「한국국민자신의 문제」에로 옮겨가는 방향을 취하지 않을수 없다

하겠다. 비록 한국문제가 동북아시아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커다란 정치적중요성을 점유하고 있다하겠지만, 비동맹중립국으로서 지역적인 한국문제자체에 하등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UN의 한국통일문제토의에 염증을 느끼고 무감각해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UN의 구조적변화와 비동맹중립세력의 대거UN진출로 말미암아 UN에서의 한국통일문제의 계속적인 토의는 장기적안목으로 볼때,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것이 될수 없다는 의견이 점고하게 되었고 1962년 제17차 총회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이에대한 대책의 하나로써 한국문제의 자동상정방식을 통한 연예적토의를 지양하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또 63년제 18차총회때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제국들도 한국통일문제의 연예적 토의를 지양하도록 종용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리하여 1968년제 23차 UN총회는 한국문제의 상정에 관하여 연예적 자동상정제도를 재량상정제도로 전환시키고, 한국통일문제의 연예적토의를 지양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UN에서 한국통일문제가 국제적관심밖으로 이탈해가고 있음을 그대로 반영한 실증자료가 된다 하겠다.

또하나 UN의 통한노력을 부정하는 결정적발전추세는 1964년이래 우.탄트 UN사무총장에 의해 매년 제창되고 있는 Universality (문화개방주의)이론에 입각한 「두개의 한국관」의 점진적등장이다. 이러한 「두개의 한국」 개념은 한국문제에 대한 UN의 명분적목적적인 「한국통일」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UN의 한국문제토의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두개의 한국」개념의 발전경향은 한국문제가운데 절차문제인 대표초청토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61년제 15차 UN총회 정치위원회의 한국문제토의에서 비록 북괴측의 UN권위 권능인정이라는 조건을 붙이긴 하였지만, 대한민국과 북괴가 동시에 UN에 참석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대한민국과 북괴를 동위화하는 정책자세로서 일종의 「두개의 한국입장」의 발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소련도 1950년한국전쟁 이전에는 북괴정권의 유일합법성을 주장하여, 「하나의 한국론」에 입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전쟁 후에는 상기의 대한정책을 수정하여, 이른바 「원하든 원치않든간에 통일을 운운할 때는 두개의 한국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것」이라는 논리하에 「두개의 한국」정책을 노골화하였다.

그리고 한국통일문제에 대하여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고 관심도 적은 비동맹중립제국은 기본적으로 The Principle of "Audi Alteram Partem" (Listen to the Other Side)에 입각하여, 한국문제토의에 있어서 한국과 북괴를 동위화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그런데 UN의 한국문제중 절차문제인 남북동시초청안을 위요한 UN총회 정치위원회의 투표결과를 보면, 두개의 한국개념이 점점 현실화해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수 있다.

남북동시초청안투표결과

회 기	년 도	회원국수	한 국 지 지	북 피 지 지	기 권 및 결 석
17	62	110	53	29	25
18	63	111	54	25	32
20	65	117	39	28	50
21	66	122	53	34	35
22	67	122	50	37	35
23	68	126	55	40	31
24	69	126	55	40	31
25	70	127	54	40	33

따라서 오늘날 한국문제를 둘러싸고 UN은 「UN 스스로가 세운 자기목적을 UN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는 자기모순속에 빠져있음을 알수 있겠다.

바야흐로 UN의 한국통일문제는 명분과 실제사이의 심각한 분열속에서 그해결의 방향을 잃고 있는것이다.

이에 반하여, UN의 한국문제토의에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즉 안전보장문제가 보다 더욱 중대한 국제적과제로 등장되어 활발히 논의되어가는 추세에 있음을 알수 있다.

이와같이 UN의 한국문제토의초점이 통일방식론에서 지역적안전보장문제로 옮겨지고 있는 경향은 1968년제23차 UN총회의 통합결의안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제 23 차 UN 총회는 「한반도의 긴장상태완화」라는 새로운 어구를 통한 결의안에 명시하고 언커크의 활동을 강화하였다.

특 언커크로 하여금 총회가 기왕에 부과된 임무를 계속 수행할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의 긴장상태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북괴의 침략적군사도발과 언커크의 증강된 임무에 감하여 언커크가 한국사태의 진전상황과 활동결과에 관하여 상시 회원국에 주지시키도록 함으로써 언커크의 「수시보고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동제 23 차총회에서 새로 채택한 한국문제의 「재량상정방식」도 기왕의 「자동상정방식」에 비하여 보건의, 통일명분 론의 측면에서 볼때는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 하겠지만, 그실 안보문제론의 측면에서는 더욱 유리하고 신축성있는 제도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안전보장에 대한 UN의 관심점고는 북괴의 무력도발행위의 증가와 더불어 비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바 그실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1967 년 주한 UN 군사령관이 의례적으로 북괴의 휴전협정위반사항을 기록한 보고서를 UN 총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1968 년에는 UN 총회가 1.21 무장 공비남침, 프에 불로호남치, 및 울진, 삼척지구의 공비침입 등 북괴의 무력도발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2) UN의 한국통일접근방법

(가) UN 총회결의방식

1947 년에서 1970 년에 이르기까지, UN의 통한방식은

한결같이 동일한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UN은 매년 「총회결의형식」을 통하여 통한방안을 재 확인하고 있지만, UN능력의 한계성과 소련과 북괴측의 강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그 방안을 실현시켜나가지 못하고 있다.

UN의 기정통한목표와 원칙은

(가)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의정부형태하의 통일, 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하고

(나)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관계제결의에 의거한 UN감시하의 진정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UN은 1950년 10월7일 총회결의제 376호에 의거, 통일촉진기관으로서 UNCURK를 설치하여 아래와 같은 주기능을 담당케 하였다.

(가) 통일 촉진 및 총선거감시기능 ;

국제연합감시하의 선거실시를 포함하여 주권국인 한국내에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

(나) 남북간장벽 제거기능 ;

한국분할에 기인한 경제적, 사회적 및 기타 우호적교류에 대한 모든 장애의 제거를 촉진하며 용이하게 할 방법을 강구할것.

(다) 평화유지(안보)기능 ;

한국에서 군사적충돌을 야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야기할 염려가 있는 이하한 사태의 진전이라도 이를 감시보고할것이며

또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상태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것.

또한 UN은 1950년 10월 7일의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와 동년 10월 7일부 총회결의 제 376(V)호에 의거, UN군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요구할때나 총회가 규정한 항구적 해결을 위한 제반 조건이 완수될때까지 계속 주둔할것을 매년 재확인하고 있다.

본래 주한 UN군은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7월 7일자 「UN통합군 사령부설치에 관한 결의문」에 의거, 북괴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이지역에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설치된것이다.

(나) 제네바회의방식

한국통일의 평화적 해결을 둘러싸고 개최된 1954년의 Geneva 회담은 아래와 같은 현실적통일접근의 점에서 아주 특이하다.

첫째 대한민국과 불법적북괴집단간의 직접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을 비롯 참전제국이 한국통일문제에 실질상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공과 직접접촉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입장으로 볼때는 UN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는 우리 통일정책의 명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공세적 자세에서 북괴와 중공을 접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Geneva 회의개최동기도 1953년 8월 28일자 「한국정치회담에 관한 결의문」에 의거한것이냐, 아니면 1953년 7월 27일

자 한국휴전협정제4조60항에 의거한 것이냐 하는 비묘한 법리적 문제가 제기되며, 이러한 법리론적문제를 위요하고 공산측과 자유진영측이 치열한 의견대립을 일으켰다.

즉 중공과 북괴측은 기본적으로 UN의 한국문제에 대한 간여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또한 휴전협정제4조60항「한국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의 군사령관은 휴전협정의 조인 발효 후 3개월 내에 한국으로부터의 전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해결 및 그밖의 문제를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각각 임명되는 대표들에 의하여 양방 고위층의 정치회의가 개최될것을 양방 관계국 정부에게 권고한다」는 조문에 의거하여 개최된 Geneva 회담은 UN과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을 비롯한 참전제국은 1953년 8월 28일 UN총회가 「한국휴전협정 60항의 이행」이란 제목의 결의를 채택하므로써, UN의 권위하에 Geneva 회의가 개최된것을 주장하고, 또한 동회담이 집단안전보장과 UN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특히 미국측대표 W.B. Smith 씨는

「중공측이 Geneva 회의가 한국문제해결의 책임을 지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 제네바회의는 UN의 통제밖에서 또는 그것을 넘어서 설치된 상설적인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특수사명”(Specific Mission)을 UN으로부터 부과받고 있는것」(13)이라 주장하고, 한국문제를 처리할 책임은 모두 UN이 지고 있으며, 이책임의 실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Geneva 회의를 개최한데 불과하다는 태

도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동기의 과정을 거쳐 개최된 Geneva 회의는 「한국문제를 처리하는 UN의 권위와 권능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한다」는 미국 및 참전국측의 기본입장과 「우선 UN과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놓고 한국통일문제를 다루겠다」는 중공북괴측의 기본태도사이의 날카로운 의견대립으로 말미암아, 한국통일문제를 다룬 관계국국제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자체이외에 아무런 실질적 타결도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동회의소요시간은 51일간에 본회의 6회, 비공식회합을 합하여 쌍방의 접촉이 20회정도 이었는바 다소 짧았다 하겠다.

이리하여 UN은 1954년 4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국정치회의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1954년 12월 11일 제 9차총회에서 동보고를 총회결의제 811 (X) 호로 승인함으로써 UN의 한국문제에 대한 목적을 재확인하였다.

이로서 Geneva 회의는 종지부를 질게 된 것이며, 동시에 중공과 북괴측과의 접촉을 통한 한국통일론의도 일단락되었다.

(3) 한국통일전망

상기의 한국통일과 UN과의 연관성에 관한 분석결과로 볼 때, UN총회의 통한결의안에 의거한 한국통일의 실현전망은 제 2차 대전 후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관계를 맺은 소련과, 한국전쟁후, 북한에 대한 불가양의 전통적 간여권을 주장하는 중공, 그리고 우리자신의 무성의한 반대로 말미암아,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원래, UN이란 전후연합강대국간의 대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것의 현상유지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세계평화기구인바, 이러한 기본성격을 지닌 UN이 전후세계정치질서인 알타체제의 변경을 의미하고 현상타파의 근본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한국통일을 구현한다는것은 지난한 일이 아닐수 없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1947년이래 20여년간 계속된 UN총회의 동한문의결과에서도, 오히려 한국통일개념과 정반대되는 두개의 한국개념이 UN자체의 변질과 더불어 세차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UN밖의 국제사회의 일반적 발전추세도 전후 분단국가들의 분단현실을 잠정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그대로 인정하려는 경향으로 더욱 세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실례가, 현재 세계여론화하고 있는 분단국가의 동시UN가입론과 서독의 동독지위승인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와같은 한국통일방향과 역행하고 있는 일반적국제정치추세는 UN안에서의 「두개의 한국관」을 보다 촉진할것이고, UN의 동한문제처리를 더욱 궁지로 몰아 넣을것으로 판단된다.

라이샤워미국무성아시아·대평양지역자문위원장은 상기의 일반정세의 발전경향을 확대해석하여 「한국통일은 UN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UN의 밖에서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한국통일관을 피력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오늘날, UN이 한국통일이란 적극적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UN의 근본성격에 비추어보아 취약함을 면할수 없겠지만, 현재 「한반도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안전보장기능을

담당한 역할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하다.

UN은 헌장 제 1장 제 1조에서 명시했듯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제 1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문제에 대한 UN의 사명을 생각해볼때 「한국에서의 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실 1950년 이래 한국통일의 명분하에 한국에 주류하고 있는 UNCURK와 UN군은 한반도에서의 현상변경, 즉 적화를 방지하고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실천하고 있다.

앞서 자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UN안에서의 국제적 여론도 한국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하여서는 매년 적극적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국토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 전제로서 「한반도에서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우리는 UN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고 종전보다 차원이 높은 적극적인 「대UN안보외교」를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금 UN군의 기축을 이루고 있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볼때, 우리는 종래의 명분적인 대UN 통일외교수준에서 안이하게 머물러 있을수 없다.

2. 70년대 UN 대비신 방안

가. 국제정세변화와 문제점

(1) 국제적일반변수

(가) UN은 중공가입을 계기로 하여 구조적으로 서방권, 동구권, 및 아아권으로 정립하여 명실공히 삼권분립화할것이다.

(나) 분단국가의 UN 가입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과 북괴는 UN의 한국문제토의에 동시참석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다) UN자신은 현장개정을 통해 명실공히 「국제적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확충할것이다.

(라) UN은 미소공존협조체제로 말미암아, UN내의 기존의 미소냉전대결체제를 해소하고 명실공히 새로운 「강대국간화해체제」로 변모할것이다.

(마) 한반도주변의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는 기왕의 미·소·중공의 삼각대립체제로부터 미·소·중공·일본의 「사각화해체제」로 재편성될것이다.

(바) 분단국가의 통일문제는 당사국민의 자국문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갈것이다.

(2) 한반도에서의 국제적 근본문제점

(가) 한반도내적변수

1)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징후

- 1970년 8월 15일 박대통령의 새로운 「평화통일구상」 발표를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정부수립 이래, 국토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일대 「국론분열」의 위기에

직면해가고 있다.

○ 그리고 현금 주한 UN군의 기축을 이루고 있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로 말미암아, 한국안보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즉 한국안보의 기본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주한 UN군의 실질상의 기능약화는 한국국방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케 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의 자주국방문제가 중대하게 등장될 것이다.

2) 북괴의 전쟁도발가능성 (70년대전반)

○ 북괴는 국토통일문제를 위요한 대한민국의 「국론분열」 정세에 적극 편승하여, 폭력적화통일전략에 입각한 소위 남한내 「인민정권」수립을 위해서 모든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할 것이다.

○ 그리고 북괴는 국방군수산업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북괴군으로 하여금 공격전략과 방위전략을 동시에 겸비한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소위 자주성의 원칙에 입각한 독자적 결정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더우기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남한의 「힘의 공백상태」 (Vacuum of Power)를 포착이용하여, 북괴는 오산에 의한 전격적남침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3) 한반도내부의 무력충돌가능성

객관적 분석각도로 보면 현재 22만평방「키로미터」의 한반도에는 비무장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현대무기와 군장비

를 갖춘 100만의 남북대군이 상호 적대국으로 대치하고 있고, 남북지역이 다같이 준전시 체제하에 놓여 있다.

더우기 해방된지 25년 동안이나 상호적대분위기속에 이질적 생활양식, 파 사고체제를 가지고 완전히 단결된 채 살아온 남북간에는 「상호 불신의 감정」이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을뿐아니라, 현재 한국과 북괴는 다같이 독자적방위능력확보라는 명분하에 「군의 장비현대화」를 내세워 일종의 「남북군비경쟁」을 벌리고 있다는 인상을 씻을 수 없다.

그실 현재 남북양지역에는 6.25 한국전쟁당시의 몇배의 병원(兵員), 화력에 더하여 핵탄두사용도 가능한 미사일까지 반입되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일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긴장조성된 남북간 대립관계를 염두에 두고 강대국간의 세력이 상호충돌하는 완충지대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휴전협정이 한반도평화를 규제하는 적대세력상호간의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것은 지극히 불안스러운일이라 하겠다.

더우기 주한미군철수로 인한 「힘의 공백」 시기를 소위 “결정적시기”로 포착이 용코자 하는 북괴의 북극적화통일전략을 감안해 볼 때, 상기의 한반도정세는 더욱 불안하고 전쟁 발발가능성을 전연 부정할 수 없다.

(나) 한반도의외적변수

1) 한국에서의 UN역할약화 징후

○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주류하고 있는 UNCURK와

UN군은 현재 북괴의 적화를 위한 남침가능성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 핵심적 기능을 실제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극동국 체정세변화와 미국의 대외정책 전환으로 말미암아, 주한미군철수가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주한 UN군의 규모와 역할은 비례적으로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다.

또 UNCURK도 1970년 11월에 와서 동기구회원국인 「칠리」의 탈퇴통고로 새로운 문제점에 부닥치고 있으며,

더우기 한반도의 긴장조성상태에 비추어봐서 한국안보에 대한 UNCURK의 기능강화가 보다 요청되고 있는 이마당에, UNCURK 구성국탈퇴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이와같이 한국안보에 직결된 「언커크」와 「주한UN군의」 기능약화경향은 한반도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 할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주한 UN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는 소위 한반도에 「힘의 공백상태」 (Vacuum of Power)를 가져오는바 이것은 오산에 의한 북괴의 남침가능성 문제를 제기한다.

(2) 북괴의 대 UN 접근행위

60년대에 들어와서, 북괴는 표면상으로는 「한국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UN의 권위와 권능」을 계속부인하는 반UN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실은 그들의 외교망을 중립국은 물론, 자유제국 일부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들측의 제안인 UN의 「남북동시초청안」

에 대한 포수회독작전을 맹렬히 전개하여, UN의 한국문제토의 참석권을 확보하는데 집중적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북괴의 적극적인 대UN접근정책은 명분상으로는 국제적지위향상에 그목적이 있다 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1950년한국전쟁후 형성된 UN의 한국안전보장체제를 공격적파하는것을 기본저의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실, 1969년부터 미국을 비롯, 서방측은 UN에의 한국문제상정을 꺼려하여 한국문제토의방식조차 연례적자동상정에서 재량상정식으로 바꾸었는데, 이에 반하여 북괴지지측은 더욱 열광적으로 한국안보에 결정적영향을 끼칠 「언커크」해체안과 UN군철수안을 각각 개별적인 독립의제로서 UN총회에 개별상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언커크해체안과 UN군철수안의 UN총회통과를 통해, UN의 한국안보체계를 파괴시키려는 북괴의 대UN접근자세는 매년 강화되고 있다.

3) 한반도주변강대국간의 무력충돌가능성 (70년대)

0 70년대전반기에는, 한반도를 위요한 미·소·중공간의 삼각세력균형관계는 주한미군철수를 계기로하여 크게 동요를 일으켜 유동상태에 들어갈것이나, 「긴장완화」를 대외기본목표로 하고 있는 강대국간에는 충격적인 큰 사건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0 그러나 70년대 후반에가서는, 한반도주변의 국제정치정세는 강대국간에 크게 긴장이 조성될것이며, 일본과 중공의 현상타파세력은 소위 한반도의 현존 「알타체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고, 한반도 주변의 신국제정치질서를 모색하려 할 것이다.

즉 핵성장의 고도화에 입각한 중공의 강력한 핵력과 경제성장의 고도화에 의거한 일본의 강력한 경제력은 지정학적으로 보아 열강의 세력 충돌을 일으키는 완충지역인 한반도에서, 상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한반도에서의 국제적 근본문제

○ 70년대의 한반도정세를 개관해 볼때, 전반기에는, 북괴가 70년대 전반에 있을 극동국제정치적 세력균형관계의 과도적 변동상향을 포착이 용하여, 오산에 의한 남침을 개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국제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70년대 후반기에는, 반알타세력파인 일본, 중공의 현상타파적 세력팽창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일본, 중공을 주역으로 한 관계강대국간의 「힘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강대국간의 「힘의 충돌」이 계기가 되어 남북간에 무력충돌을 불러일으켜 국제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또한 70년대 후반에서 한반도에서 아직 강대국간의 력관계가 국제전쟁에로까지 발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중공과 일본의 세력팽창으로 인해 국제적 긴장이 격화일로로 접어들 것은 명백하다 하겠다.

나. 70년대, UN신전략(안)

본안은 중공의 UN가입으로 말미암아 UN의 현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성격변화를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UN의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현금 한국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한 UN군과 UNCURK를 철수 및 해체해야 할 지경에 이르는 최악의 불리한 상황전개를 가정하여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대비방안으로서 순전히 이론적으로 시도삼아 강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1) 한국문제해결의 새로운 접근태도

한국통일문제를 그 성격에 따라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로 구분하여 명확한 한계성을 설정한다.

(가) 국내문제

한국의 “통일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국민자신의 문제」이므로, 본통일문제는 한국국민의 자결권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나) 국제문제

한반도의 “평화유지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성격을 지닌 국제문제이므로, 본문제는 UN헌장에 입각해볼때 UN이 제일차적으로 (Primarily)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라고 전제한다.

(2) 한국문제해결방법

(가) 한국통일방안

한국의 통일은 UN헌장제 2조7항에 의거, 한국국민의 자결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민족주체적인 한국통일방안의 기본방향은 1970년도에 들어와서 신평화통일구상을 밝힌 박대통령의 8.15선언의 원칙에 입각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은 원칙적으로 국내관할사항으로 간주하고 가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여기서 생략한다.

(나) 한반도평화유지방안 (안)

1) 극동지역안전보장의 기본방향

70년대의 국제추세로 보아 한·미·일 남방협력체제는 중·소·북괴·북방군사동맹체제에 비하여, 힘의 우위를 유지확보함으로써 남·북방양체제간의 긴장완화를 도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목적의 성취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아래의 2대정책방향을 동시에 채택한다.

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추구

한국은 한반도주변관계국인 미·소·일·중공 4대강국사이에 한반도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UN권위하의 「국제조약」을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아시아·태평양지역 집단안전보장체 제구축노력

대한민국은 한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기축으로 한 한·미·일 삼각방위체제를 보다 강화 발전시켜, 중·소·북괴 삼각동맹체제의 적대적 침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힘의 우위를 계속 확보유지함을 제 1차적인 당면 외교목표로 한다.

동시에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각료이사회(ASPAC)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적극추진하여 이지역의 집단적방어태세강화확립에 계속노력한다.

2) 한반도평화유지장치의설립

가) 평화보장자; UN

(UN의 목적과 책임) UN은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함에 있어 제1차적인 (Primarily) 책임을 지고,

동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한다.

(근거) UN헌장과 대한민국정부의 정식요청

나) 평화유지수단

UN은 한반도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UN헌장에 의거, 아래의 기구를 상설한다.

① UN감시단

(활동범위) 본기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가능성을 제거하여 동지역의 긴장상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동지역의 국제적성격을 지닌 새로운 사태발전상황을 UN및 UN회원국에 알려,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조치를 강구함을 그목적으로 한다.

(구성) 본기구의 구성원결정은 UN(안보리 혹은 총회)결의에 의거해야함을 원칙으로 하여야겠지만, UN에 의해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주류기간) 한국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이 이룩되어 국제분쟁의 요인이 살아질때까지 동기구는 한반도에 주류한다.

(조직결정권) UN사무총장이 원칙적으로 동UN감시단의 조직결정권을 소유하며 동기구의 조직에 있어서는 UN에 의해 한반도상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받은 대한민국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U N 평화유지군

(목적) U N 평화유지군은 한반도에서의 U N의 평화유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요청과 U N의 결의에 의거, 한반도에 주둔한다.

(조직) U N 사무총장이 동 U N군의 조직결정권을 소유하며 동 U N군을 구성하는 참가국선택기준을 설정함에 있어는 U N 사무총장이 U N에 의해 한반도상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대한민국정부와 협의하여 U N (안보리 혹은 총회) 결의에 의거 결정한다.

(설치근거) U N 평화유지군은 U N 헌장제 29조에 의거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 혹은 헌장제 22조에 의거한 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설치되어야 한다.

(U N 군 활동비)

U N 평화유지군예산은 U N의 일반예산항목이나 혹은 특별회계로서 조달되어야 한다.

(주둔기간) 한국통일의 평화적해결이 이룩되어 국제분쟁의 요인이 살아질때까지 U N 평화유지군은 한반도에 주둔한다.

3) 남북군비경쟁의 제거

U N감시하에 남북양지역의 군비축소가 단계적으로 단행되어야 한다.

(3) 70년대 U N 신전략(안) 적용에 따른 실제상의 문제점과 대책

(가) 휴전협정과의 연관성문제와 방책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한국전쟁의 성격 자체가 제 1은 대한민국과 북괴반도단체(및중공)간의 전쟁이고 제 2는 국제연합군과 북괴, 중공정권간의 전쟁이라는 이중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UN에 가입하고 중공이 UN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은 휴전협정을 매개로 하여 중공과의 국교정상화를 모색하는 것 보다는 UN헌장권위하에 관계정상화를 기도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

그러므로 상술한 70년대의 UN 신전략(안)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한국은 북괴존재승인의 의미를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는 휴전협정과는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북괴존재를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대의 명분상으로 보아 더욱 유익하다 하겠다. 대한민국의 국시와 한국민족사의 입장으로 보아, 한국은 도저히 북괴존재를 국가로서 승인할 수 없고 또한 북괴정권승인의 의미와 북괴와의 사실상협정체결의 의미를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는 휴전협정을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수락하여 협정당사자의 지위가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내) 기존한 국안보장치의 문제점과 보강방책

1) UNCURK구성국보장 및 변형문제와 방책

한국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노력을 위하여 UN의 대리로서 한국에 주류하고있는 UNCURK는 UN의 한국통일론의의 인기저락추세

가 더불어 약체화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즉 금년 11월에 들어와서 언커크회원국인 칠리가 언커크를 탈퇴함으로써 상기경향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UNCURK의 약체화경향은 국제무대에서의 중공세력확장과 비례하여 보다 짙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공이 UN에 가입하여 UN의 한국문제에 대한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UNCURK의 한국주류가 결정적위기에 직면하게될 가능성을 전연 부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첫째 UNCURK의 약체화에 대한 대비로서, 한국은 UN의 세력구조적변화를 감안하여 친서중립국을 UNCURK 회원국으로 보장하여 중립세력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해 두는것이 보다 유익한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중공의 UN 가입으로, UNCURK의 계속주류가 결정적위기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한국은 UN의 통한론의염증추세를 감안하여 UNCURK를 상술한 UN신전략(안)에서 제시한 「UN감시단」의 성격으로 변형할것을 제의하여 동기구의 한반도주류에 대한 정치적 명분과 이론적근거를 뚜렷히 내세워 UN내 중립제국의 호의적 호응을 획득함으로써 UNCURK의 완전해체를 방지하고 UN과 한국문제를 계속 연결 시켜두는것이 보다 바람직한것이고 전략적으로도 유익한것이라 하겠다.

이는 바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에 대한 UN의 역할강화를 희망하는 한국 및 자유진영제국의 기본입장과 일치되는 방향이기도 하다.

2) 주한 UN군 지위, 강화문제와 방책

「북괴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회복한다」는 전투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한 UN군은 첫째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 둘째 미·중공 화해가능성, 셋째 중공의 UN가입가능성 등의 새로운 국제적변수로 말미암아 약체화 내지 기능축소 경향을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특히 중공이 UN에 가입하여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치적발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투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한 UN군이 그존재조차 부정당하고 계속존재조차 어렵게 될 가능성을 전면 부인할 수 없다하겠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전개에 대비하여 한국은 주한 UN군을 UN헌장 제29조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 혹은 헌장제22조에 의한 총회의 보조기관으로 그지위를 보장시켜, 상술한 UN신전략(안)에서 제시한 소위 「UN평화유지군」으로 개칭 강화하는것이 한국안보에 있어 보다 유익하고 오늘날의 UN정세로 보아 그실현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무조건 외군철수를 내용으로하는 북괴의 주한 UN군 철수안의 불합리한 허구성을 폭로하게 되어 정치적명분상으로도 UN군 한국주둔의 정당성이 인정될수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한국안보에 절대적인 UN군한국주둔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UN권위하에 있는 UN군의 한반도주둔이야말로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여 한반도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실질적 보장책으로 판단된다.